

#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제 안 설 명

- 존경하는 이현찬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!  
안녕하십니까? 안 광 석 의원입니다.
- 본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.
- 현재 서울시는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하게 대우받고 권익을 보장받으며,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하여 미래사회의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는 기반인 청소년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해 「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.
- 한편, 「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 지원 등에 관한 조례」 제2조와 「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2조 제2호에서 다자녀 가족의 기준을 2인 이상의 자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.

- 이에, 본 의원은 「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의 제8조제2항제8호의 다자녀 가족 기준을 완화하고, 다자녀 가정의 양육부담을 감경하기 위해 기존 100분의 30의 사용료 감면율을 100분의 50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.
  
-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 
-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제안 설명을 마칠 것입니다.

감사합니다.